

강의평가 결과 활용 및 후속조치에 관한 지침

□ 목적

- 매학기 말 실시하는 수강생 대상 강의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, 교수법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규정함.

□ 관련근거

- 「경남도립남해대학 교원 인사관리규정」 제15조의 4 내지 제15조의 9

□ 주의 및 시정조치

- ‘평가점수 3.5 이하’인 교원은 <주의> 조치 및 <강의 개선계획> 징구
- <강의 개선계획>은 학과장 취합 → 교무부장 심사 → 총장 보고

□ ‘강의배정 및 임용(위촉)’ 제한

- 동일 교과목에서 2회 <주의 및 시정요구>를 받은 비전임 교원(시간강사 포함)은 해당 교과목에 대해 2년간 임용(위촉) 제한
- 동일 교과목에서 2회 <주의 및 시정요구>를 받은 전임 교원은 해당 교과목에 대해 2년간 강의배정 제한
- 교과목과 상관없이 합산(최근 3년간)하여 4회 <주의 및 시정요구>를 받은 비전임 교원(시간강사 포함)은 모든 교과목에 대해서 2년간 임용(위촉) 제한(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초빙·겸임·산중 교원 등은 사임 권고 혹은 해촉)
- 교과목과 상관없이 합산(최근 3년간)하여 3회 <주의 및 시정요구>를 받은 전임 교원은 <경고>조치, 다음 학기의 강의평가 결과 ‘평점 3.5 이하’가 한 교과목 이상 나오는 경우 해당 교과목과 최근 3년간 <주의 및 시정요구>를 받은 교과목 모두에 대해서 강의배정 제한
- ‘평가점수 2.5 이하’인 교원(전임, 비전임, 시간강사)은 다음 학기부터 해당 교과목에 대해 2년간 강의배정 및 임용(위촉) 제한

□ 행정사항

- 본 지침은 2018학년도 1학기부터 발효